

DL 이앤씨
통합 ESG 정책집



목 차

서 문	3
정책별 제·개정 이력	4
환경경영 정책.....	6
생물다양성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	11
인권경영 정책.....	15
안전보건경영 정책	21
공급망 ESG 관리 정책	24
지역사회 참여 정책	29
정보보호 정책.....	31
기업지배구조현장	35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41
윤리현장	43
윤리경영 정책.....	44
부패방지경영 정책	51
해외사업에서의 법규위반행위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지침	54
책임 있는 AI 정책.....	58

서 문

존경하는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DL이앤씨는 '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비전 아래 ESG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경영 요소로 삼아 왔습니다.

금번 정책 제.개정은 이러한 방향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ESG 정책 체계 전반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정책 간 역할과 책임을 한층 분명히 하고 내부적으로 운영해 온 방침과 관리 기준을 명문화함으로써, 실제 경영 및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집은 중대한 경영 환경 변화나 ESG 이슈 발생 시 정책의 적정성에 대해 이사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정책집에 담긴 내용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건설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기대에 성실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책별 제·개정 이력

정책명	제정	개정 이력					
		제 1 차	제 2 차	제 3 차	제 4 차	제 5 차	제 6 차
통합 ESG 정책집	2026.05.14						
환경경영 정책	2022.06.15	2024.06.10	2026.05.1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	2022.06.15	2024.06.10	2026.05.14				
인권경영 정책	2022.06.15	2026.05.14					
안전보건경영 정책	2026.05.14						
공급망 ESG 관리 정책	2024.05.07	2026.05.14					
정보보호 정책	2026.05.14						
지역사회 참여 정책	2026.05.14						
기업지배구조헌장	2021.03.23	2026.05.14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2022.06.15	2026.05.14					
윤리헌장	2000.05.22	2026.05.14					
윤리경영 정책	2000.05.22	2003.08.01	2004.01.01	2007.01.01	2012.07.01	2012.09.17	2026.05.14
부패방지경영 정책	2021.10.26	2022.06.15	2024.08.26	2025.10.22	2026.05.14		
해외사업에서의 법규위반행위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지침	2005.12.31	2012.12.31	2013.12.30	2021.01.15	2026.05.14		
책임 있는 AI 정책	2026.05.14						

환경(E) 정책



환경경영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무한(廣大無限)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기업이념에 기반하여 “지속가능한 Green Construction 실현”을 지향한다.
- 2) 이에 따라 환경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2) DL이앤씨의 협력업체, 계약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인수·합병 대상 기업 포함)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ESG 위원회

- ① ESG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포함한 ESG 경영 전반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환경·에너지 관련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저감활동과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환경경영이 전사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2) ESG Working Group

- ① 임원진으로 구성된 ESG Working Group을 통해 기후변화 및 기타 환경경영 이슈를 전사 통합 관점에서 관리하며, 외부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3) 실무 전담조직

- ① 환경경영 전담조직은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환경경영 매뉴

열 및 지침 등 엄격한 내부 기준 마련, 환경 및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 환경경영시스템 내부심사, 환경 성과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환경과 기후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전담조직은 설계, 연구개발, 구매 조직 등에서 친환경 설계·공법·기술 개발, 녹색구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② 기후변화 대응 전담조직은 환경 전담조직과 협력하여 에너지 효율화 활동 이행, 탄소저감 목표 설정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중장기 목표 대비 달성률 등을 점검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환경경영 영역별 기본원칙

- 1) 법규 준수 및 환경의식 고취
 - (1) 환경·에너지 관련 국내·외 법규 및 협약을 준수하고 환경사고의 예방을 위해 엄격한 내부기준을 적용한다.
- 2)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ISO 14001 인증을 기반으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 (1) 생산활동 및 사업시설의 친환경 관리
 - ① 사업 착공 전 환경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정적 환경영향 저감을 위한 공법 선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지속가능한 그린건설을 위하여 사업활동 및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수 등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한다.
 - ③ 환경관리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 문서 및 기록관리, 내부심사 등의 프로세스와 각 부분별 표준을 수립하고 관리한다.
 - (2) 제품 및 서비스 개발
 - ①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다양한 환경 이슈가 DL이앤씨의 사업에 미치는 위기와 기회요인을 인지하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 ② 국토교통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ro Energy Building, ZEB) 의무화 로드맵 및 쾌적한 거주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고효율 친환경 설계를 지속해서 확대한다.
 - (3) 폐기물 관리

- ① 건설·철거 과정의 친환경 체계 마련을 위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포함하여 재활용을 확대하고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발생, 보관 및 처리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가) 전사 프로젝트에 대해 설계 단계부터 폐기물 관리계획을 수립·반영하고, 프로젝트별 폐기물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 확대를 위한 관리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모든 협력업체가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률 향상 목표를 반영한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가) 협력업체 평가 기준에 폐기물 관리 항목을 반영하고, 자재 회수 및 재활용에 우수 협력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③ 건설현장 내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기준 및 운영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전체 현장 중 50% 초과에 대해 폐기물 분리보관소를 설치하여 종류별로 분리보관 하고, 폐기물 처리 허가 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한다.
 - ⑤ 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처리되는 폐기물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 지역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 정보를 현장에 제공하는 등 스마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 ⑥ 재활용 제품 거래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재활용 제품의 구매 및 판매를 정기적으로 추진한다.
- (4) 공급업체, 서비스 제공자, 계약업체 관리
- 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소통과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 ② 협력업체의 환경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공종별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협력업체 환경관리 역량 향상 프로그램(DL-Environment Enhancement Program for Partner, D-EEP)을 운영한다.
 - ③ 정기적으로 협력업체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하여 공급망 전체의 환경 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 (5) 유통 및 물류
- ① 물류 협력업체의 선정 및 등록 시 협력업체의 환경절차서를 검토하여 물류 과정의 친환경성을 확인한다.
 - ② 운송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침서 등을 통해 관리한다.
 - ③ 국내·외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수출해야

하는 경우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를 파악하고, 관련 법에 따라 화학물질이 안전하게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한다.

(6) 인수 및 합병 시 사전 실사

- ① 인수·합병 전 해당 기업에 대한 사전 실사를 통해 환경 위험을 파악하여 사전 대응한다.
- ② 주요 환경 매체별 평가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평가결과는 인수·합병 시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3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5절 인식 제고

1) 내부 이해관계자

- (1) 임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법규 및 협약 준수,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등 환경경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임직원들이 일상 업무에서 환경경영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2) 외부 이해관계자

- (1)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의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업체 대상 환경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환경경영을 위해 외부 기관과 협력하고,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통하여 환경경영시스템을 강화한다.

제6절 대외 협력 및 의사소통

1) 정부기관

- (1)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 동향을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2) 국가별 환경·에너지 관련 법규 및 규제 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준수한다.

2) 주주 및 투자자

- (1) 주주와 투자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경영 성과를 개선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3) 공급망

- (1) 환경경영 추진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공급망과 공유하며, 친환경 공급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4) 고객

- (1)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정보를 제공하며,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다.

5) 지역사회

- (1) 사업 운영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단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과 권고를 수렴하여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6) 임직원

- (1)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환경교육 및 환경 캠페인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환경인식을 제고한다.
- (2) 임직원의 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환경경영에 반영한다.

생물다양성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사업장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관리한다.
- 2) 이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물다양성 보호 및 산림파괴 금지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고자 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2) DL이앤씨의 협력업체, 계약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인수·합병 대상 기업 포함)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ESG 위원회

- ① ESG위원회는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산림파괴 금지 활동 등 자연자본 관련 위험 및 기회 요인에 대한 대응 방향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자연자본 이슈가 전사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장 생물다양성 정책의 기본원칙

제4절 생물다양성 법규 준수

- 1) 프로젝트 대상 지역이 생물다양성 보호와 국제 협약(World Heritage areas,

IUCN Category I-IV protected areas)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해당지역 및 국가의 법적 요건을 준수한다.

제5절 생물다양성 리스크 식별

- 1) 가치사슬 전반의 비즈니스 활동을 대상으로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 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TNFD) 및 과학기반 목표 네트워크(Science Based Targets Network, SBTN) 등 국제적인 논의와 방법론 등을 참고하여 정기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평가 결과, 생물다양성 중요도가 높거나 자연자본 고갈 위험이 큰 지역을 우선순위 지역(Priority Areas)으로 식별하고 관리한다.

제6절 생물다양성 손실 최소화

- 1) 식별된 우선순위 지역 내 프로젝트 수행으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생물다양성 파괴 위험을 예방, 최소화 및 완화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최소 순 손실(No Net Loss, NNL) 및 긍정적 영향(Net Positive Impact, NPI)을 위해 노력한다.
- 2) 개발과정에서 생물종의 다양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고객의 녹색공간 제공을 위한 조경 구간은 바이오톱 조성, 다양한 수종 식재 등을 통해 생물다양성 증진을 유도한다.

제3장 산림파괴 금지 정책의 기본원칙

제7절 순 산림파괴 제로(No Net Deforestation) 달성

- 1) 산림파괴 최소화를 고려한 친환경적 설계를 하고, 2050년까지 순 산림파괴 제로(Net Zero Deforestation)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전 사업장에 대한 수목 이식, 대체 서식지 확보, 복원 및 재조림 등 적극적 조치를 이행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8절 공급망 산림파괴 리스크 방지

- 1) 공급망의 산림파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평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공급업체와 함께 친환경 경영시스템을 전개한다.

제9절 건전한 산림 생태계 조성

- 1)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국가 및 지역의 건전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DL이앤씨의 환경 사회공헌 활동인 "맑음나눔"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한다.

제10절 교육 및 정보 제공

- 1) 관련 정책에 대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제11절 정기적 성과 검토

- 1) 지속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인 성과를 검토한다.

사회(S) 정책



인권경영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공개경영, 윤리경영,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 「세계인권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국제노동기구 헌장」(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constitution),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지지한다.
- 2) 이에 따라 정도경영의 정신 기반으로 순리에 벗어나지 않는 바른 경영을 추구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동시에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2) DL이앤씨의 협력업체, 계약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 3)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해당 국가의 법규나 조직의 정관 또는 사규 등에 특별한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DL이앤씨의 모든 임직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ESG위원회

- ① ESG위원회는 인권경영 실현을 위한 제도 수립 및 인권영향평가 이행 결과 등 인권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인권경

영의 실행 역량과 책임을 강화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차별금지 및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존중

1) 차별금지

-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사업활동에 있어서 성별, 인종, 종교, 연령, 나이,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는다.

2)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존중

- (1)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여성 인력 채용 확대 등 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수립하여 인력 운영에 반영한다.
- (2) 공정한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를 통해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성별이나 연공에 관계없이 성과에 기반한 차별 없는 보상을 제공한다.
- (3)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 제도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제5절 근로조건 준수

- 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과도한 노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설정·관리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연차유급 휴가를 보장한다.
- 2)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 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제6절 인도적 대우

- 1)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7절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금지

- 1)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따르

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또는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일체의 성희롱 행위를 금지한다.

- 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금지한다.
- 3) 사내 취업규칙에 따라 위반 행위를 관리하고, 윤리경영 정책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해 명시함으로써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제고한다.

제8절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 1)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노동 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제9절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1)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감금, 협박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인신매매를 포함한 자유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 2)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하며, 현지 법규상 그 고용이 불법(위반)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인원이 근로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권장한다.

제10절 산업안전 보장

- 1)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2)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 등의 조치를 신속히 제공한다.

제11절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 1) 주요 공급업체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업체의 인권경영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2절 지역주민 인권 보호

- 1)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생명권,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제13절 고객 인권 보호

- 1) 모든 임직원의 활동은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마케팅을 함에 있어서 과장하거나 고객을 오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 고객의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하며, 경영활동을 통해 수집·저장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제3장 인권 리스크 관리 체계

제14절 인권경영시스템 수립 및 이행

- 1) 전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본 정책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인권경영시스템을 수립·이행한다.
 - (1) 인권경영시스템은 인권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미흡사항 조치 및 개선 지원, 이행 현황 공개 등 인권 리스크 관리 전반의 절차를 포함한다.

제15절 리스크 식별 및 평가

- 1) 평가지표 개발
 - (1) 본 정책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OECD 실사 가이드라인」(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법무부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 등을 참고하여 근로환경, 근로조건, 인력운영, 산업안전, 지역주민 및 고객의 인권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점검지표를 개발 및 운영한다.
- 2) 평가 프로세스 운영
 - (1) 인권 침해 발생 현황과 잠재적 인권 리스크 발생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한다.
 - ① 평가대상 선정: 본사 및 해외사무소, 자회사를 대상으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
 - ② 자가진단(Self Assessment): 평가대상에게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 도출된 미흡한 사항에 대

해서는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한다.

- ③ 현장실사(On-Site Due Diligence):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평가대상에 대한 인터뷰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리스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현장실사도 진행할 수 있다.
 - ④ 개선계획 요구: 자가진단 및 현장실사를 통해 발견된 '고위험' 및 '부적합' 사항(리스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개선 조치나 개선 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 (2) 인권 침해 사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평가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권 리스크 평가 지표 및 프로세스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한다.

제16절 미흡사항 조치 및 개선 지원

1) 개선방안 도출 및 협의

- (1)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도출된 인권 리스크에 대한 개선 방안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한다.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본사와 국내·외 법인, 거래관계 조직 등은 리스크 개선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과제를 도출한다.

2) 이행 현황 모니터링

- (1) 인권 리스크 평가를 받은 조직의 업무 담당자 등이 상호협의를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개선방안이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절 이행 현황 공개

1) 주요 의사결정권자 보고

- (1) 인권 리스크 평가를 통해 확인된 중대한 인권 리스크 및 개선방안을 ESG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권자에게 보고한다.
- (2) 승인된 보고자료는 인권경영 추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2) 대외공시

- (1) 인권 침해 신고사례, 인권 리스크 평가 결과, 리스크 개선 및 완화조치에 대한 정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또는 별도의 채널을 활용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4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18절 임직원 인권경영 교육

- 1)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등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실시하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안전한 조직·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한다.
- 2) 성별, 세대, 인종, 민족, 국적, 문화적 배경, 연령 등에 관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교육을 실시한다.

제19절 고충처리

- 1) 사업장 내 인권 침해 피해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보 채널을 운영한다.
 - (1) 신고 및 상담 프로세스
 - ① 접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며, 고충처리위원 중 여성 고충처리위원을 별도로 두어 여성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지원한다.
 - ② 조사: 접수된 내용에 따라 상담 및 사건의 경위, 행위의 반복 및 지속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③ 조치: 사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규에 따른 징계조치 등을 결정한다.
 - ④ 결과 통지: 신고자 혹은 피해자에게 징계 조치 유무 및 관련된 내용을 안내한다.
- 2) 모든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사규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안전보건경영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당사 사업장이 위치한 국내외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산업안전보건경영 체계 가이드라인」(ILO-OSH, 2001)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등 국제 기준을 준용하여 본사와 현장을 아우르는 다층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2) 이에 따라 전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안전보건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의 모든 구성원, 협력업체 및 계약업체를 포함한 회사의 감독 하에 있는 개인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1) 이사회
 - ① 이사회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연간 계획, 분기별 안전보건 실적 및 최고안전보건책임자(이하 "CSO")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결하며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항을 감독한다.
 - (2) ESG위원회
 - ① ESG위원회는 연간 안전보건 활동 실적을 보고 받으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 운영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 (3)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 ① 이사회로부터 안전보건경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CSO는 안전보건방침 및 안전보건 경영계획을 승인하고, 관리 체계 이행 및 유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

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안전 최우선

- 1)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
- 2) 모든 작업은 관련 법규, 절차 및 작업계획에 따라 수행하며 매뉴얼 기반의 안전작업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 감사를 실시한다.

제5절 책임과 참여

- 1) 모든 구성원은 안전을 선택이 아닌 준수해야 할 기본 의무로 인식하고,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 2) 임원 및 조직 책임자의 KPI에 안전점검 시행 실적 및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반영하여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 3) 근로자 참여 기반의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하고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자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한다.
- 4) 안전보건 실무협의체 및 노사 협의체 등을 운영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보건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제6절 안전보건 강화

- 1)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등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 2)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 특성 및 위험요인을 반영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 3) 사업장 및 작업공정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1) 정기 위험성평가는 안전보건관리 조직을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기계·기구·설비 또는 원재료의 신규 도입 및 변경, 작업절차 또는 작업방법의 변경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거나 일 단위로 진행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 ① 위험성평가 사전 검토 회의를 통해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여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한다.
 - ② 작업공정, 설비, 작업환경 등을 대상으로 실질·잠재적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심각도에 따라 위험성을 평가하며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다.

- ③ 도출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위험요인을 관리·개선하며, 근로손실재해율(Lost Time Injury Frequency Rate, LTIFR)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한다.
- ④ 공중별 사고사례 데이터를 위험성평가 시스템에 등재하여, 유사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사항을 필수적으로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다.
- ⑤ 위험성평가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를 통하여 고위험 작업 및 주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개선 조치를 이행한다.

제3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7절 안전보건 교육

- 1) 전 임직원, 협력업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임직원 및 협력업체, 외부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대책 이행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대처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1) 임직원 및 협력업체, 외부기관 관계자들에게 안전대책 이행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응급대처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교육을 진행하고, 현장 내 필수 이행사항을 전달한다.

제8절 고충처리

- 1)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련 위험요인 및 개선 필요사항을 상시 제보·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 채널을 운영하며, 이와 연계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자발적 신고 및 참여를 유도한다.
 - (1)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는 현장에 부착된 QR 코드 등을 통해 안전신문고에 접속하여 현장 위험요인을 신고하거나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 (2) 해당 채널을 통해 개선사항 발굴에 기여한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포함한 현장 내 모든 근로자는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 (3) 안전신문고에 위험요인에 대한 위치, 내용 및 사진 등을 등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고는 현장안전팀, 시공팀에서 접수 후 검토 및 조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신고자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공급망 ESG 관리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공급망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DL이앤씨의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상생하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급망 ESG 관리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2) DL이앤씨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업체 등 공급망에 해당하는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적용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ESG위원회

- ① ESG위원회는 공급망 ESG 관리 전략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며, 공급망 내 잠재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운영 현황이 경영전략과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공급망 ESG 관리 체계

- 1)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업체와 상호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전한 성과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제5절 협력사 행동강령 배포 및 준수 요구

- 1) 「협력사 행동강령」을 통해 협력업체의 사회적 책임 준수 요건을 정의하고, 기업활동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제공한다.
- 2) 행동강령 준수에 대한 조항을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하여 모든 공급망이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 3) 협력업체의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협력업체를 포함한 비즈니스 전반의 ESG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 DL이앤씨 「협력사 행동강령」 주요항목

영역	세부항목
노동·인권경영	강제노동·및 아동노동 금지, 근로시간 준수, 차별·괴롭힘 금지, 임금·복리후생, 인도적 대우, 결사의 자유 등
환경경영	에너지 소비와 대기 배출가스 최소화, 오염방지 및 폐기물 저감, 자원 효율성, 유해물질 관리, 정기적 환경점검,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
윤리경영	부당행위 및 부패 방지, 공정거래, 이해상충 및 반경쟁 방지, 지적재산권 및 개인정보보호 등
보건·안전경영	산업안전, 산업재해 및 질병 예방, 비상상태 대응 등

제6절 공급망 ESG 평가 및 리스크 관리

- 1) 공급망의 ESG 경영 현황 및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망 ESG 점검 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안전·보건, 환경, 노동·인권, 윤리의 4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한다.
- 2) 자가점검, 평가, 리스크 식별, 개선조치 이행, 이행 결과 점검의 과정을 통해 공급망의 건전성을 높이하고자 노력한다.
- 3)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시 ESG 점검 결과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ESG 성과가 우수한 공급업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가 정해진 기간 내에 최소한의 ESG 요건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거래를 제재할 수 있다.
- 4) 지속가능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주관으로 전체 협력업체 대상 공급망 ESG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진행 사항은 이사회 내 ESG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1	점검 대상 선정	• 거래 공종/품목, 거래의 연속성 등 고려
2	DSSC 실시 및 결과 분석	• DSSC(자가진단) 실시 • 리스크 고위험군 식별(평가 하위업체)
3	제3자 현장교육/실사	• ESG 경영 확산 교육 • 현장실사 진단 실시
4	개선 계획 수립/이행	• 취약점 개선 요청 • 개선 계획 수립/이행
5	개선 검증	• 개선 결과 점검 • 협력업체 평가 반영

(1) 서면평가

- ① 협력업체의 행동강령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잠재 리스크를 파악하고자 연 1 회 시행되는 DSSC(DL E&C Suppliers Sustainability Check-list)를 통해 ESG 서면평가를 진행한다. 서면평가는 ISO 26000,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SMETA(Sedex Members Ethical Trade Audit)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의 표준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으며, 리스크 점검 범위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2) 현장실사

- ① DSSC(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하위 협력업체를 ESG 리스크 고위험군으로 식별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및 현장실사를 진행하여 실질 리스크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안을 도출한다.

(3) 개선검증

- ①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개선 결과를 확인한다. ESG 점검 결과를 협력업체 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7절 공급망 ESG 역량 향상 지원

- 1) 공급망의 ESG 리스크 관리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급망 관리 전담 조직이 각 공급망의 ESG 리스크를 관리하고 필요한 전문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행한다.

(1) 재무 지원

- ① 협력업체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업하여 상생펀드를 운영한다.
- ② 협력업체가 에너지 저감 설비 투자, 친환경 건설자재 구매 등 ESG 리스크 개선 목적의 투자를 수행할 경우 자금 조달과 이자 경감을 지원한다.

(2) 안전관리 지원

- ① 협력업체의 산업재해예방 역량 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컨설팅을 통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수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 ② 협력업체가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전담자의 추가 배치 시,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과 안전용품을 지원해 협력업체 임직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

성에 기여한다.

(3) 기타 지원

- ① 협력업체가 보유한 잠재된 기술력의 조기 고도화·상용화를 위해 공동기술개발 성과 공유제를 운영한다.
- ② 협력업체가 신기술 개발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협력업체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
- ③ 협력업체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되는 우수 협력업체에는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여 협력업체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지원한다.

(4) 교육 지원

- ① 공급망 전체의 ESG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ESG 리스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업체 경영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경영환경 변화의 이해와 리스크 관리 등 협력업체 ESG 경영에 접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 ② 협력업체 실무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과 ESG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지원한다.

제8절 지속가능한 구매 관행

- 1) 매년 임직원 대상으로 하도급 공정거래 등 공급망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윤리 경영 및 ESG 교육을 실시하여 ESG를 고려한 구매 활동 및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공급망 ESG 관련 주요 사항을 구매 조직의 KPI에 반영하여 관리함으로써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한다.

제3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9절 협력업체 ESG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 1) 협력업체 초청행사, 상생협의체 운영, 분기별 협력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DL이앤씨의 주요 ESG 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우수 협력업체 포상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협력업체 간 전문기술·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ESG 인식 제고와 공동 실행 과제 추진을 지원한다.
- 2) 협력업체 포털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운영하여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안내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문의 접수 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와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한다.

제10절 고충처리

- 1)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DL이앤씨 제보 채널(사이버신문고, 상생톡톡)을 운영한다.
- 2) 공급망, 임직원 모두가 제보 채널에 접속할 수 있고, 주제에 상관없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반인권, 비윤리적 행위 등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 3) 제보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보복을 엄격히 금지하며, 보복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은 엄중히 징계한다.

지역사회 참여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같이짓다(Value Creator)"라는 철학 아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신뢰,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방향성, 기본원칙 및 관리체계를 규정한 지역사회 참여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역주민 및 공급망 전반에서 사업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지역사회 참여 정책 기본원칙

- 1) 회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UN 지속가능개발목표(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SDGs) 및 회사 사회공헌 철학과 연계한 4대 중점 사회공헌 영역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추진한다.

희망:짓다	더 나은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주거 개선으로 희망을 실현합니다.
신뢰:짓다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으로 사회적 신뢰를 쌓습니다.
관계:짓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관계를 만듭니다.
미래:짓다	환경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합니다.

- 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며,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3) 사업활동이 지역사회에 미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지역사

회 관련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제3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5절 인식 제고

- 1)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2) 지역사회 참여 활동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보보호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함께 증가하는 보안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의 개인정보 및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2) 이에 따라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보보호 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의 모든 구성원은 본 정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 2) DL이앤씨의 협력업체, 계약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1)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전사 정보보호 리스크를 총괄하며,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 현황을 감독하고 내부 감사 및 외부 검증 결과 등을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점검한다.
 -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 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는 경영진 차원의 감독체계를 중심으로 정보보호 전략 및 운영체계를 관리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정보보호 정책 기본원칙

- 1) 정보자산의 식별 및 관리
 - (1) 회사 내 모든 정보는 회사의 중요한 자산이며, 정보자산은 정보 소유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 의해 관리된다. 또한 정보자산을 중요하게 보호하고 다양한 형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산 분류 및 관리 기준을 수립·운영한다.
- 2) 정보보호 체계의 지속적 개선 및 투자
 -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본 정책의 이행 상태와 보안 프로세스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최신 보안 트렌드와 위협 동향을 반영하여 관리체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 (2)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보보호 시스템 및 보안 솔루션 도입, 취약점 대응 체계 강화, 보안 인프라 개선 등 정보보호 관련 투자와 운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3) 데이터의 무결성 및 보호 보장
 - (1) 정보 및 데이터의 저장, 전송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조, 유출, 훼손 또는 삭제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적용하여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보장한다.
- 4) 정보보안 위협의 모니터링 및 대응
 - (1) 정보보호 프로세스와 통제를 포함한 측정 및 모니터링 대상을 선정하고, 유효한 결과를 보장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 (2) 취약점 진단 및 분석을 수행하여 보안 취약점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 5) 임직원 정보보호 책임 및 의무
 - (1) 임직원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자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
 - (2) 회사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실천서약을 시행하여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정보보호 활동이 조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한다.
 - (3) 임직원은 보안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보고 체계에 따라 전사 정보보호 담당 부서에 신고하며, 회사는 관련 대응 절차에 따라 사고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한다.
- 6) 제3자 정보보호 기준 적용
 - (1) 제3자 아웃소싱 보안 절차를 마련하여 협력업체 등 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정보보호 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한다. 또한

제3자와의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이용 과정에서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관리한다.

제3장 이해관계자 인게이지먼트

제5절 인식 제고

- 1) 임직원의 정보보호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하고, 전사적인 보안 문화 확산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한다.
- 2) 협력업체 및 계약업체 등 제3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요구사항을 안내하고 보안 점검 및 관리 활동을 통해 외부 이해관계자의 정보보호 인식을 제고한다.

거버넌스(G) 정책



기업지배구조헌장

전문

DL이앤씨(이하 "회사")는 풍요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미래와 세상의 기본을 만들어 삶의 가치를 높이하고자 한다. 건전한 지배구조의 확립이 고객, 임직원, 협력업체,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업 지배구조헌장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주주

제1절 주주의 권리

- 1)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정기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 2) 정관의 변경, 합병,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3)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적시에 제공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 4)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적법한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 의장은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제안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5) 주주총회의 결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주주는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절 주주의 공평한 대우

- 1) 주주는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하고 공평하게 제공한다.
- 3) 회사는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며, 이와 관련된 내부통제장치를 마련·운영한다.

제3절 주주의 책임

-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이사회

제4절 이사회 기능

- 1)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법령 및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다.
- 2) 이사회는 중요 경영 의사결정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경영진에 대한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제5절 이사회 구성

- 1) 회사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3인 이상, 11인 이내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독립이사를 3인 이상으로 이사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6절 이사회 운영

- 1)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 2) 이사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회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제정·운영한다.
- 3)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유지·보존한다.
- 4)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 5) 이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절 이사회 내 위원회

-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모든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결의는 이사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원회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3) 이사회는 감사위원회 결의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8절 이사의 선임

- 1) 전문성을 가진 유능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이사회가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독립이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3) 독립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4)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며,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으로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5) 회사는 이사 후보에 대한 최대주주와의 관계, 회사와의 거래내역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주가 이사 선임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절 이사의 의무와 책임

-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속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대규모 기업집단이나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 또는 전체 주주에 손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이사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이사가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러한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 5) 회사는 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유능한 인사의 안정적인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임

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6)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소홀히 수행했을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7) 회사는 이사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사내·외 교육을 제공하며, 신임 독립이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주요 회계 및 법률 리스크 등에 관한 직무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제10절 독립이사의 역할

- 1) 독립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2) 회사는 독립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며, 독립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한다.
- 3) 독립이사는 충실한 직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독립이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5) 독립이사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독립이사만으로 이루어진 독립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장 감사기구

제11절 감사위원회

- 1)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3분의 2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이어야 한다.
- 2)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 업무집행의 적법성,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재무보고의 정확성,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 총회에서의 보고 등을 수행한다.
- 3)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목표, 조직, 권한과 책임 그리고 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한다.
- 4) 감사위원회는 회의를 분기별로 1회씩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회사 경영진, 재무 담당임원, 내부통제 조직의 장 등에게 회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
- 5) 감사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6) 감사위원회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7) 감사위원회 위원은 회사와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며, 회사의 이사 및 주요 주주와 혈연 등 특수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사로서의 보수 외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제12절 외부감사인

- 1)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한다.
- 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한다.
- 3) 외부감사인은 부주의한 회계감사로 인해 회사 및 정보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4)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5)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을 고려한다.
- 6)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임되며,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장 이해관계자

제13절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 1) 회사는 고객, 주주 및 투자자, 협력업체, 임직원, 지역사회, 공공부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 2)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 3)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 4)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각각의 권리는 보호되고 행사될 수 있어야 한다.
- 5)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제5장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

제14절 공시

-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공시하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공시한다.
- 2) 회사는 정기공시 외에 법적 의무사항 등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적시에 공시하며, 미래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황에 대한 예측정보를 적절하게 공시한다.
- 3) 회사는 공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며,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 중요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마련·운영한다.
- 4)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 5) 회사의 대표이사와 재무담당책임자는 재무 보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인증한다.
- 6) 회사는 윤리경영 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게시한다.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이사회 구성에 있어 국내 「상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글로벌 규정¹⁾을 준용하여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보다 엄격한 독립이사 선임 요건을 적용하기 위한 이사회 독립성 및 다양성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¹⁾ 「NYSE Listed Company Manual」 Section 303A

제2절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독립이사 후보군 관리 및 이사 선임 과정 전반에 적용되며, 이사회가 이사 후보를 추천·선임하는 과정에서 독립성 및 다양성 요건을 고려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인사위원회

- ① 이사회 산하 인사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후보의 자격 심사 기준 및 절차를 정하며 독립이사 신규 선임 시 후보자의 전문성, 충실성, 독립성, 청렴도 및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등을 평가하여 주주총회에 추천할 최종 후보자를 의결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이사회 독립성 원칙

- 1) 독립이사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독립적이라고 판단하며, 이 밖에도 독립이사가 당사와 어떠한 중대한 관계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당사에 근무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당사에 근무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인 경우
- (2) 최대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인 경우 또는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인 경우
- (3) 최근 2년 이내에 다음 법인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인 경우
 -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당사와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 이상인 법인
 - ② 당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 (4) 당사 외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로 재임 중인 경우
- (5) 독립이사의 직계 가족이 최근 3년간 당사의 이사, 집행임원인 경우
- (6) 최근 3년 이내 본인 또는 가족이 12개월 동안 당사로부터 7천만원(미화 6만불 상당) 이상의 보상을 받은 경우(급여 등 보수 제외)
- (7) 퇴직일로부터 3년간 당사와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우(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시 예외)

제5절 이사회 다양성 원칙

- 1) 당사는 주주 및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이사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특히 이사회 구성에 있어 폭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독립이사 후보자의 국적, 성별, 연령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1) 국적: 글로벌 선진 지배구조 구축을 고려한 국적 다양성
 - (2) 성별: 다양한 관점의 반영을 위해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는 성별 다양성
 - (3) 연령: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및 이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령 다양성
 - (4) 기타: 인종, 민족, 종교 등 기타 다양성 요소

윤리헌장

(Charter of Business Ethics 기업문화로서 정도경영을 실천하는 DL의 가치관 표현)

DL이앤씨 임직원은 정도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DL이앤씨 윤리헌장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내 윤리규정을 실천하고 비즈니스 제반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하나. 우리는 모든 사업활동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개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평한 기회제공과 공정한 평가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합리적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윤리경영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을 창출하고, 광대무한(廣大無限)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창조, 인간존중, 고객신뢰"를 경영원칙으로 삼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주는 경영을 펼쳐 선구자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다.
- 2) 이에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기업의 모든 부분에서 지키고 따르기 위하여 윤리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과 그 종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 단위의 임직원이 윤리적 책임과 소명을 바탕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1)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효과적인 윤리경영 운영을 위해 준법경영실 소속 실무조직을 구성하여 관련체계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제4절 용어의 정의

- 1) 임직원: 임원, 일반직, 전문직, 현장채용직, 파견직 등을 포함한 회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
- 2) 금품 등
 - (1)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2) 식사, 술자리, 골프, 공연, 오락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수단, 숙박시설, 관광, 행사지원 등의 편의 제공

- (3)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3) 이해관계자: 임직원, 고객, 거래처, 국내·외 공무원 등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또는 그룹

제2장 기본원칙

제5절 임직원의 기본윤리

- 1) 임직원은 다음과 같은 모든 업무 수행에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임하며, 한 숭정신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 (1) 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 ①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②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③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 및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 (2) 성실의무 이행
 - ①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②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야 한다.
 - (3) 공정한 직무 수행
 - ①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 ②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DL이앤씨 임직원으로서의 품위 및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업무상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사손을 끼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범위와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 금품 등 수수 금지
 -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단, 인지하지 못한 상태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금품 등과 함께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접대 및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 상호간에도 과도한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화환, 축전 등 불필요한 허례허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인사청탁 금지

- ① 임직원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채용·승진 등을 위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금지

-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보증 등 채무거래를 금지한다.

(4) 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장비,公款,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 유·무형 자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①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육체·언어·시각적 행동을 포함하여 동료의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6절 고객가치 실현

- 1)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창출자로서 광대무한한 발전의 원천인 고객을 위해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과의 신용을 중시하며,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감동을 실현하고 고객신뢰를 확보한다.

- (1) 고객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경청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한다. 또한 고객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유지한다.
- (2) 고객의 요구를 이해하고 이를 반영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고객에게 최적의 가치를 제공한다.

제7절 공정한 거래와 경쟁

- 1)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사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서약을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하고,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거래자 상호간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1)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① 국내·외 모든 사업활동에서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관습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②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준수한다.
- ③ 기타 법규 위반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컴플라이언스 전담 조직과 사전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2) 공정한 경쟁

- ①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얻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우위를 확보한다.
- ② 소비자가 오인시킬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거나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는다.
- ③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 ④ 경쟁사의 임직원과 모임, 연락, 정보교환 등 직·간접적인 접촉을 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접촉 시 담합 의심행위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다.

(3) 공정한 거래

- ①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한 거래조건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② 거래행위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뇌물수수나 선의의 거래를 위반하는 각종 부당행위를 금한다. 특히, 이를 이용한 무리한 서비스 및 자료 요청 강요, 수수료·대금 감액 및 지급 지연 등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공동의 이익과 발전의 추구

- ①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을 위해 거래자 상호간 동반자 관계를 확립한다.
- ② 상호 기술 수준 향상 및 개발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한다.

제8절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한다.
 - (1) 인간존중
 - 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하며, 임직원이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인재의 육성
 - ① 건전한 윤리의식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자기개발과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 (3) 공정한 대우
 - ① 능력과 업적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립하여 공개하고 이를 준수하여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하며, 학벌·지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한다.
 - (4)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책임
 - ①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한다.

제9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

- 1) 합리적인 사업활동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풍요로운 삶의 창출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1) 국가 및 사회발전에 공헌
 - 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창출한다.
 - ②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해가 되는 사업 전개를 지양하며, 모든 사업 활동 시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 ③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여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제공한다.
 - (2) 주주의 보호
 - ① 건실한 이익실현과 합리적인 투자로 주주의 이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 ② 기업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투자자와의 적극적인 소통(Investor Relations, IR)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를 도모한다.
 - (3) 환경 보호

- ① 환경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국제환경협약을 능동적으로 수용한다.
 - ② 사업활동, 제품 및 서비스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원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며, 친환경 공법 적용 및 기술개발에 노력한다.
 - ③ 전 임직원이 환경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거래처 또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를 유도한다.
- (4) 정치적 중립
- ①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운영체계

제10절 윤리경영 실천서약서 작성

- 1) 모든 임직원들은 윤리경영 정책을 잘 숙지하고 DL이앤씨 임직원으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실천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1절 위반행위 및 금품 수취 신고

- 1) 회사의 윤리경영 정책 및 윤리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이해관계자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수취하였고, 또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금품·선물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 금품·선물과 함께 제보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 3) 신고처
 - (1) 전화: 02-2011-8114
 - (2) 팩스: 02-2011-8019
 - (3) E-mail: ethic@dlenc.co.kr

제12절 포상과 징계

- 1) 윤리경영을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한다.
- 2) 윤리경영 정책을 위반한 임직원은 사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13절 윤리경영 교육 및 감사

- 1) 임직원의 윤리·준법 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실천, 관련 법규 및 내부 기준 준수 등에 관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2) 준법경영실 산하 전담부서는 윤리·준법 등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는 대표이사 와 감사위원회에 매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절 윤리경영 정책의 해석 및 적용

- 1) DL이앤씨의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본 정책에서 규정하지 않았거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경영진단팀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윤리경영 실천의 근간이 되는 본 정책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부패방지경영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국가의 반부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조직 내 부패·뇌물수수 등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부패방지경영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DL이앤씨 본사, 국내·외 현장 및 법인과 그 종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 단위의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 2) 협력업체, 계약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및 기타 비즈니스 파트너 등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 또한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 (1)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내부 감사 및 제보 채널 등을 통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점검하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방지 대상 부패 항목

- 1) 모든 형태의 뇌물수수의 금지
 - (1) 금품 등 금전·비금전 및 유·무형의 어떠한 형태의 뇌물 및 부정한 이익 수수 행위 금지
 - (2)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된 리베이트·통행세 등 어떠한 형태의 부정한 이

익 수수 행위 금지

2) 인사청탁 금지

- (1)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채용·승진 등을 위한 청탁 금지

3)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 금지

- (1)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 보증 등 채무거래 금지

4) 내부자 거래 금지

- (1)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및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거래 행위 금지

5) 법률에 정하지 않은 정치적 기부 금지

- (1) 개인의 정치적 참여를 위한 회사의 조직, 인력, 자산의 사용 금지
- (2) 회사명의 혹은 회사를 대리하여 정부 혹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기부를 하거나 승인하는 행위 금지
- (3) 해당 국의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정치적 기부가 뇌물 등 부정한 이익의 제공의 수단으로 되는 행위 금지

6) DL이앤씨 정책 및 규정, 관련 법령에 정하지 않은 자선 기부금 및 후원 금지

- (1) 당사의 정책 및 규정,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 및 후원이 가능하며, 어떤 형태로라도 뇌물 등 부정한 이익의 제공 수단으로 되는 행위 금지

7) 기타 DL이앤씨 「윤리경영 정책」 및 국내·외 법률에 반하는 모든 행위

제3장 운영 체계

제5절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교육 및 감사

- 1) DL이앤씨는 윤리·준법 의식 함양과 실천을 위해 전 임직원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등 주요 윤리경영 이슈 관련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2) 준법경영실 산하 전담부서는 윤리·준법 등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는 대표이사 와 감사위원회에 매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절 위반 사항 처리 절차

- 1) 부패방지경영 정책에 따른 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1) 신고 시 회사 내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제보 채널을 이용할 수 있

다.

- (2) 제보를 받은 담당부서는 절차에 따라 제보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 진행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제보 과정에서 제공된 진술 및 자료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호한다. 정당한 제보에 따른 불이익, 차별 및 보복행위를 금지하고,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한다.
- 3) 본 정책에 따른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시정 및 예방조치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체계의 효과성을 점검하여 지속적인 개선 및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

해외사업에서의 법규위반행위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지침

제1장 지침의 목적,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임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 단독으로 혹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¹⁾를 통해 해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규율하기 위해 해외사업에서의 법규위반행위 금지 및 부패행위 방지 지침(이하 "지침")을 수립한다.

¹⁾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회사와 컨소시엄(Consortium) 계약, 합작(Joint Venture) 계약, 경영자문(Consultancy) 혹은 대리 위임(Agency) 계약, 하도급계약(Subcontract) 등의 기타 업무협력(Business Cooperation)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여 회사와 업무협력 관계에 있는 개인 혹은 법인과 그 임직원, 자회사 등을 의미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비즈니스 파트너")

제2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내부 감사 및 제보 채널 등을 통해 확인된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점검하며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내부 통제 체계 전반에 대해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3절 관련 법규의 준수

- 1) 임직원은 회사의 윤리경영 기준을 따르고, 외국 기업과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 국가 및 지역의 해외부패방지 관련 법규, 규제, 정책 및 합리적인 상관습(이하 "관련 법규")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련 법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1) 국내의 「형법」 및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미국 해외부패방지법」(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OECD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등 국내·외 해외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국제 규범 등

(2) 공정한 거래를 통해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영정책에 따라, 회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각 국가의 경쟁법, 반독점법 및 경쟁원칙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국제 규범 등

- 2) 회사의 이러한 지침 및 경영정책은 회사의 해외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설명되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한 함께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직원은 회사의 이러한 정책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은 해외 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에 지급되거나 회사를 대신해 발생한 모든 대금지급·비용·채무 등을 회사의 회계 및 장부 기재 절차에 따라 반드시 정확하고 적절하게 기록하고 기술하며, 위 지급·비용·채무는 반드시 증빙문서 및 증거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제4절 해외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지침

- 1) 임직원은 회사와 관련되어 해외에서 비즈니스 파트너와 컨소시엄(Consortium) 계약, 합작(Joint Venture) 계약, 경영자문(Consultancy) 혹은 대리 위임(Agency) 계약이나 기타 하도급 계약(Subcontract) 등의 업무협력(Business Cooperation)에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협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 및 조치하여야 한다.
- 2) 임직원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부정하게 사업을 취득 혹은 유지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 국가기관이나 공무원 혹은 기타 관련자(이하 "외국공무원 등")에게 금품(선물)·접대·편의 제공 등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이익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공하거나, 약속하거나, 만들거나, 그러한 행위들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 (1) 합리적인 사람이 추론하기에 회사가 외국공무원 등에게 부적절한 이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은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위와 같은 사항을 「별첨」(Confirmation of Compliance)을 이용하여 확인한다.
- 3) 임직원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외국공무원 등이 속한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4) 보고 및 조사
 - (1) 임직원은 자신 혹은 회사의 다른 임직원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가 본 지침에 위반되거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관련 당사국의 공무원 혹은 민간

인과의 접촉이나 정보교류가 있는 경우 즉시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 상급자는 위 보고를 받는 경우, 독립된 경영진이 지휘하는 내부조사팀을 구성하여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 (3)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관련 업무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임직원은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4) 내부조사팀은 위 조사결과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5) 내부조사팀 조사 결과, 관련 법규에 대한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상급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업무협력계약 내지는 업무협력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
- (6) 회사는 위반 사실에 대한 보고가 없는 한, 임직원이 회사 관련 업무를 관련 법규에 적법하게 수행하였다고 신뢰한다.

5) 서류유지 및 업무제외 조치

- (1) 위 조사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진행을 위하여 내부조사팀은 즉시 관련 서류에 대한 유지공고(Document Retention Notice)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임직원을 조사대상 업무에서 제외시키는 조치(Isolation Order)를 취할 수 있다.

6) 조사평가 및 재발방지

- (1) 회사는 조사결과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 및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별 첨 : Confirmation of Compliance

[Name and Address]

Date :

Subject : Confirmation of Compliance

Dear Madam/Sir,

DL E&C Co., Ltd. ("DL E&C"), in doing its business at home and abroad, is to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and compete with others in a fair way and manner, thereby building a mutually reliable and cooperative business relationship for the mutual benefits and development.

[] acknowledges and agrees that it is the policy of DL E&C to comply with all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l jurisdictions in which it does business, and [] warrants and represents that it has not, in relation to("Project"), taken any action, or will not take any action, which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r implicate DL E&C in a violation of any law of jurisdiction in which it performs services, or under which it is organize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Bribery Prevention Act of 1999 ("FBP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of 1977, as amended("FCPA") and where applicable, legislation enacted by member States and signatories implementing the OECD Conventi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FBPA prohibits every Korean company and its employees and representatives or agents from giving, paying, promising, offering, or authorizing the payment,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 third party, of anything of value to any "foreign public official" to persuade that official to help the company, or any other person, obtain or retain business or to secure some other improper advantage.

[] shall immediately notify DL E&C of any violation or potential violation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be responsible for any damages caused to DL E&C from such violation of [] or its agents and partners in relation to the Project.

For and On behalf of

[]

Name and Signature

책임 있는 AI 정책

제1장 정책의 목적 및 적용 범위, 책임 및 역할

제1절 목적

- 1) DL이앤씨는 인공지능(이하 "AI") 시스템의 사용 및 개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AI 사용에 대한 임직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AI 정책(이하 "정책")을 수립한다.

제2절 적용 범위

- 1) 본 정책은 DL이앤씨가 자체 개발·도입·운영하거나 제3자를 통해 활용하는 AI 기반 시스템 및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3절 책임 및 역할

- 1) 본 정책은 DL이앤씨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수립되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한다.
- 2) 본 정책의 이행 및 관련 관리체계의 운영은 전담 거버넌스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1) 감사위원회

- ①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는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내에서 책임 있는 AI 사용을 관리한다.

제2장 기본원칙

제4절 AI 시스템의 사용 및 개발 원칙

- 1) AI 모델이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AI 시스템을 개발 및 운영하며, 관련 법령 및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 2) AI 사용 및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정보보호 관리 규정에 따라 시스템 및 인프라를 보호하고, 무단 접근·유출·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이행한다.
- 3)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및 출력 결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으로 인해 특정 집단에 차별적이거나 불공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잠재적 편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

제5절 AI 시스템의 책임성 및 통제 원칙

- 1) AI 시스템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되돌릴 수 없는 의사결정과 관련 되는 경우 단독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며,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친다. 필요 시 임직원이 AI 기반 판단 결과에 대해 개입·수정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한다.
- 2) AI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AI 활용 사실을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히 고지하며, AI가 생성한 결과 또는 의사결정에 대해 이해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도록 한다.
- 3) AI 시스템으로 생성된 결과가 업무 수행 또는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경우, 최종 판단에 대한 책임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임직원에게 귀속된다. 다만, AI로 인한 오류 또는 부정적 영향이 법적·재무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서별 정보보안 담당자의 책임 하에 사내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4) AI 시스템을 설계 지원, 현장 모니터링 및 고객 응대 등 업무 보조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고 공사 안전, 품질 및 고객 권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음을 인지하여 해당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제6절 환경 및 사회적 영향

- 1) 자체 또는 제3자를 통해 운영되는 AI 시스템 및 관련 인프라의 에너지·물 사용과 탄소 배출 등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 설비의 사용 및 탄소배출 저감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 2)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영역의 AI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다.
 - (1) 정보 사용자의 판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AI 시스템
 - (2) 연령, 장애 또는 특정 사회·경제적 상황 등으로 인한 취약점을 악용하여 행동을 왜곡하는 AI 시스템
 - (3) 출신, 성별 등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근거로 점수화 또는 등급화 하여 차별적 대우 및 결과를 초래하는 사회적 점수화 목적의 AI 시스템
 - (4) 무단으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식별(Remote Browser Isolation, RBI)에 관여하는 AI 시스템